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01 호 2019. 10. 24.(목)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06호[울산광역시 복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07호[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6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08호[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09호[울산광역시 복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10호[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11호[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12호[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13호[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규 칙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6호[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7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7호[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8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42

예 규

- 울산광역시 복구 예규 제18호[울산광역시 복구 공람문서 처리 지침]····· 75

고 시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222호[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79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228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사항 고시]····· 80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229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81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23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83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23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84

공 고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1151호[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87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
4.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회의 구성) ① 협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구청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민·관 합동 혁신으로 지역갈등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문 및 협의기능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제1조, 제2조)
-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제3조 ~ 제6조)
- 협의회 회의 및 분과협의회 설치·운영(제7조, 제8조)
- 간사, 의견 청취, 회의록, 수당 등(제9조 ~ 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구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협의회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등
 - 1) 구청장의 책무(제3조)
 - 2)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제4조)
- 자치분권협의회
 - 1)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 제8조)
 - 2)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제9조 ~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을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행정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각종”을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을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제2항 중 “찬성”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중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를 “이상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로 목적, 기능상 필요하나 안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제13조제1항, 제5항)
 -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보완 (제14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 법 제 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 번호 및 법인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이 명시된 동의 철회요청서
2.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제1항 중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을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정취소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상인회”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상인회 등록취소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제33조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등 신설(제5조의2)
- 시장의 인정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제10조, 제10조의2)
- 상인회의 등록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제26조, 제26조의2)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정산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변경(제27조)
-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 신설(제33조, 제33조의2)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제34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점용료의 부과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를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준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관련 조문 수정(제5조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준용)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삭제>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 기 한		금 액 (천원)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규정 삭제(제2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제22조)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21조 및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삭 제>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차	2차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 신설(제10조의2)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제21조)

- 현행 : 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 :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거. 전단(1,000매당)	5,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더. 전자계시대(1건) <신설 16. 12. 15.>	6,000원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초과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초과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초과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초과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 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 2.6㎡ 초과 3㎡ 미만
- 라) 연면적 3㎡ 이상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이상 5㎡ 미만

- 3㎡ 초과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초과 5㎡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 6㎡ 초과 8㎡ 이하
- 8㎡ 초과 10㎡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8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법 제20조 제1항제2호</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3. (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 제1항 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가. 1회 위반한 경우</p> <p>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 제2항</p>	<p>25만원</p> <p>45만원</p> <p>100만원</p>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 추가(별표3)
 - 10m² 이하 : 5,000원
 - 10m² 초과 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조항 삭제(별표3)
-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6)
 - 옥외광고사업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6호

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건명											
：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협조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 품 (매 입, 수 리, 제 조) 명 세											
물품분류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명칭	수량	단 가	금 액	용 도				
계(소요예산액)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실과장 성명 :											
재 무 관 귀 하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약칭 필요(제2조제1항)
-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의 추산필란 정비(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7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평생교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이 국민권의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반환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센터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제14조제3항)
 - 사용료 원칙적 반환 불가, 과·오납의 경우 반환
 - ⇒ 반환불가 규정 삭제, 과·오납의 경우 반환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규정 개정(제17조제1항)
 - 수강료 원칙적 반환 불가, 예시 조항에 해당될 경우 반환
 - ⇒ 반환불가 규정 삭제, 예시 조항에 해당될 경우 반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세무조사”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구·군과 연관된 자
2.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3. 취득가액 30억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4. 지방세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지방세에 관한 규모·업종 및 신고, 납세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구청장은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연간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연간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2.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3조(중복조사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2.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대상자의 성실 납세의 정도,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접세무조사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방법으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 조사
2. 서면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 조사 다만, 그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한 조사
3. 부분세무조사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하여 제2호의 방법으로 하는 조사

제17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세무조사의 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및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3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중지) ① 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5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제26조(조사권 남용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28조(세무조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2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의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관한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대상자가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 결과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7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대상자
-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현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호서식]

(7-1)

지방세 서면 조사서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조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건설업 ()	
(전화) (팩스)	판매업 ()	
(메일주소)		
○ 제출일자: 년 월 일	운송업 ()	
	기 타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m²)

(7-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법인의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의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서식은 사업연도별 각각 작성 하시고, 각 서식 작성 시 울산광역시 북구 전체 분에 대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료는 년 ~ 년도 연도별 제출

- 한글 , 엑셀 파일서식 요청가능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전자민원→ 민원서식→ 부과과에서 다운 가능)

※ 작성 후 보낼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부과과

우편번호 (44248)

- 이메일 :

※ 문의 전화 : (052) 241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

(7-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공 통 제 출

1. 지방세서면조사서 1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복구 등록사항 모두)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결산서내(연도별 작성):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상장법인은 제출 생략
(주식변동 시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포함)
 - ②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③ 공사(제조, 분양 등)원가명세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 ④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자산별 상세내역- 총괄표 아님)
 - 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복구 외 사업장 안분 신고한 경우)
5. 보조장부내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①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물, 건설중인 자산 계정
 - ② 관관비, 원가계정 중 - 급여, 노무비 관련 계정
 - ③ 기타계정 -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세금과공과, 건설용지
6.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타 지역에서 일괄 신고한 경우 울산 근무 직원 급여자료(월별집계표)로 대체
7. 별첨서식

(서식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복구 소재 사업장)
 (서식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복구 소재 사업소)
 (서식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복구 소재 사업소)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 정관 (비영리법인만 제출)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조사기간 내 부동산 양도·양수 시)
3. 도급공사 명세서 내역 (건축 및 건설업일 경우)
4. 차량양수 및 양도계약서 사본
(취득 후 바로 처분하여 계정에 없는 경우)
5. 종업원(일용직 포함) 50인 이상일 경우
 - ① 급여지급대장, 노무비지급대장
 - 공사 현장명 및 소재지 필히 기재 후 현장별로 제출
 - 용역과건 업체의 경우: 현장별 인력과건 현황표 별도 제출
 - 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또는 소득자료명세서
 - 세무조정계산서 내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m²)

(7-4)

<서식1>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 주소		사업장명	
------	--	--------	--	------	--

구분 월별	종업원수	소 득 세 납 부 액							산출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10mm×297mm(백상지 80g/㎡)

(7-5)

<서식2>

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소)

사업연도	
------	--

사업소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 (㎡) (a)	건축물 (b)	저장시설 (c)	① 비과세면적(㎡)				과세면적 (㎡) (e) (a+b+c-d)	② 정당세액	납부세액	납부일자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d)				

※ 작성요령

- ① 비과세 면적 : 종업원의 보건위생이나 교양등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회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체육관, 도서관,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구내 이발소와 병기고, 탄약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중과대상 500원)
- ※ 중과대상 사업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7-6)

<서식3>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소)

사업연도		사업소 주소												사업소명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①근로소득	급여													
		상여													
		③소계													
②법관세소득		연장													
		차량													
		⑤소계													
③종업원분주		관리													
		생산													
		수시													
		계													
급여지급일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															
관세표준액 (총급여지급액) $C = (a + b)$															
④공제액 (d)															
⑤산출세액 $e = [C - d] \times (0.5/100)$															
납부세액															
납부일자															

※ 사업소가 많을 경우 사업소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10mm×297mm(백상지 80g/㎡)

(7-7)

※ 서식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2016년도 지급분부터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란 작성

(2015년도까지 지급분은 작성 불필요)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④ 공제액 : 공제액 = (신고한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⑤ 산출세액: 2015년도분까지는 ③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6. 1. 1. 급여지급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㉔) - 공제액(㉕)]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압수 · 영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 년월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 · 영치)합니다.

압수 ·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 · 영치장소						
압수 · 영치사유						
압수 ·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참 여 자	소속		직		성명	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예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장소						
예치사유						
참 여 자	소속		직		성명	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사유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

(단위: 원)

법인명	등록 번호	설립· 잔업일	주 소	사업장	업종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	상장 여부	조사일	직전 조사일	휴폐 업일	특이 사항 (연락처)
									추징 세액	추징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 규칙안에 따라 현행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기본 형식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6조)
-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간 정기선정의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심의(제9조)
- 중복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세무조사”의 근거 마련(제11조)
-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 낭독 의무 및 조사 사유, 권리구제 절차 등의 설명 의무 부여(제32조)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제36조)

울산광역시 복구 공람문서 처리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 예규 제18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람문서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접수된 문서의 공람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접수한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람처리) 접수문서 처리담당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각 호에 따른 문서를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공람할 결재권자의 범위를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람할 자의 범위) ① 접수문서 공람에 관한 결재권자의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② 별표 외의 접수문서 공람에 관한 결재권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접수문서의 처리담당자는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담당자에게도 공람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람에 관한 결재권자의 범위(제4조제1항 관련)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공람에 관한 결재권자의 범위					
		담당자	담 당	실·과장	국·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1. 법령 등 제정·개정 사항 통보	가. 법령 제정·개정 통보	접 수				○	
	나. 행정규칙 제정·개정 통보	접 수				○	
	다. 각종 조례 표준안 통보	접 수			○		
	라. 정책 가이드라인 통보	접 수		○			
2. 업무협조 통보 (자료제출, 현장점검, 회의 개최, 재난대응경보 등 포함)	가.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조	접 수				○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	접 수			○		
	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	접 수		○			
	라. 유관기관 업무협조	접 수		○			
3. 공모사업 신청	가. 공모사업(10억 이상) 공모	접 수					○
	나. 공모사업(5억 이상) 공모	접 수				○	
	다. 공모사업(1억 이상) 공모	접 수			○		
	라. 공모사업(1억 미만) 공모	접 수		○			
4. 지시사항 통보	가. 국정사항	접 수				○	
	나. 시정사항	접 수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접수문서의 신속한 공람 범위 지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과 목적 명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 접수된 문서의 공람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 공람처리 기간 명시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공람에 관한 결재권자 범위 지정
 - 단위업무별 결재권자 범위 지정
 - 처리과의 관련부서 공람 조치 규정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22호

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매곡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

3. 점용 목적 및 개요

가스관 이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당초 -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외 1필지

변경 -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일시 - 당초 297.6㎡ 변경 187.98㎡

영구 - 당초 49.3㎡ 변경 60.8㎡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19. 8. 5. ~ 2020. 2. 4.

영구 : 2021. 2. 5.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9-22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약)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협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허가사항

허가 (협약) 년월일	허가 (협약)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협약) 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10. 22.	2019 - 16	울산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504-1번지 일원 공유수면	36	2019. 10. 22. ~ 2019. 10. 31.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2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로 16-20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9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16-20	2019-10-24	기존자연마을에위치하 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4-08
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07-1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 4로 13	2019-10-24	호계·매곡지구명칭사 용을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11-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 4로 44	2019-10-24	호계·매곡지구명칭사 용을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4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05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247	2019-10-24	관문성으로가는길이라 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 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B3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140	2019-10-24	자연부락명칭을사용해 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0-04-27
6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646-1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 32	2019-10-24	기존자연마을인음달마 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44B 1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6길 32	2019-10-24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64-1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 업로 226-1	2019-10-24	모듈화산업단지내에조 성된도로로도로명을부 여하였다.	2010-04-27
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3B 1L	울산광역시 북구	고현로 178	2019-10-24	고현박상진의공을기리 기위하여도로명을부여 하였다.	2001-03-22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3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고현로 178	진장·명촌지구 53B 1L	2019. 10. 24.	건축물멸실
신천로 37-9	신천동 190	2019. 10. 24.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9 - 2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중산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변성수 외 1인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6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 **【붙임1】** 참조

2019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명칭	울산 중산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울산 중산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변경없음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6 (중산지구 1블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6					변경없음
사업주체	중산동 지역주택조합, (주)신한					중산동 지역주택조합, (주)한양건설					변 경 (공동사업주체)
사업주체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97-1, 2층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97-1, 2층 (호계동)					변경없음
대지면적	15,101.4000㎡					15,101.4000㎡					변경없음
건축면적	2,198.4035㎡					2,198.4035㎡					변경없음
연 면 적	40,567.1934㎡					40,567.1934㎡					변경없음
건폐율/용적률	14.56% / 191.33%					14.56% / 191.33%					변경없음
층수/동수/세대수	지하2층, 지상19~22층 / 주: 5개동, 부속: 10개동 / 347세대					지하2층, 지상19~22층 / 주: 5개동, 부속: 10개동 / 347세대					변경없음
사업규모	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변경없음
	59A	80	59.9921	22.9390	82.9311	59A	80	59.9921	22.9390	82.9311	변경없음
	59B	246	59.9871	23.3843	83.3714	59B	246	59.9871	23.3843	83.3714	변경없음
	59C	21	59.9231	22.7992	82.7223	59C	21	59.9231	22.7992	82.7223	변경없음
	계	347				계	347				변경없음
부대복리시설	구 분	합 계(㎡)				구 분	합 계(㎡)				
	경비실	11.8900㎡				경비실	11.8900㎡				변경없음
	관리사무실	71.3728㎡				관리사무실	71.3728㎡				변경없음
	조경시설	4,554.1600㎡(30.16%)				조경시설	4,554.1600㎡(30.16%)				변경없음
	주차장	360대				주차장	360대				변경없음
	경로당	91.5291㎡				경로당	91.5291㎡				변경없음
	어린이집	163.2750㎡				어린이집	163.2750㎡				변경없음
	주민공동시설	77.0040㎡				주민공동시설	77.0040㎡				변경없음
	주민운동시설(외부)	179.7800㎡				주민운동시설(외부)	179.7800㎡				변경없음
	어린이놀이터	566.0000㎡(2개소)				어린이놀이터	566.0000㎡(2개소)				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	339.4595㎡				근린생활시설	339.4595㎡				변경없음
사업비	64,800,376천원					64,800,376천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7. 12. ~ 2020. 02.					2019. 11. ~ 2022. 02.					변 경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변경[(주)신한 → (주)한양건설] • 사업기간 변경[2017. 12. ~ 2020. 02. → 2019. 11. ~ 2022. 02.] • 조합장 변경, 설계자 변경 등 현행화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 - 1151 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4.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19. 10. 24. ~ 2019. 11. 13.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번	설치예정장소	비 고
1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이동식 2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연암동)

o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241-7804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